



. 더불어 행복한 강진, 군민이 주인입니다.

2019년 작천면 종합감사 결과



강진군
[기획홍보실]

2019년 작천면 종합감사 결과

I 감사 개요

1. 감사기간 : 2019. 06. 17.(월) ~ 06. 19.(수) / 3일간

2. 대상기간 : 2017. 06. 01. ~ 2019. 05. 31. / 2년간

3. 감사반 : 7명

○ 통제관 : 기획홍보실장 운영갑

○ 감사요원 : 6명

- 기획홍보실	감사팀장	이재희
- 기획홍보실	지방행정 6급	이영일
- 기획홍보실	지방시설 6급	김근영
- 기획홍보실	지방행정 8급	이이슬
- 주민복지실	사회복지 6급	송봉근
- 환경축산과	지방농업 6급	김진근

II 총 평

1. 일반행정분야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회의)시 운영 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용 무상쓰레기 봉투 배부시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수급자의 서명 등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으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시에도 보조사업자가 건축물 철거 즉시 건축물대장을 말소 신청하도록 안내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하나 소홀히 하였다.

2. 외계분야

- 업무추진비로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 할 경우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50만원 이상의 경우 전달자의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주민자치 강사수당 지급함에 있어서도 일정금액(250천원)을 초과하면 소득세(주민세)를 원천 징수 지급하여야 하는데 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인증기 수입(증지대금)에 있어서도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 하는데 최장 5일까지 지연 불입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건설 분야

- 공사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기간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기간이 누락된 하자보수보증금 각서를 받았으며,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존속기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하자보수지급각서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도 1,000분의 0.5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자연재난 등을 대비하여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는데도 자재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4. 복지분야

-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에 대하여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관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통장 등을 점검하고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여 함에도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경로식당운영 보조금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5. 농업분야

- 농지원부 작성시 관리지침에 의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정비 관리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축산 농기계 지원 사업 후 매년 2회이상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토양개량제(석회) 지원사업 일환으로 농가에 공급한 토양개량제를 농작물이 식재 되기전 살포가 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나 일부 방치되어 있었다.

Ⅲ 감사 결과

1. 지적 건 수 : 15건

- 행정상 조치 : 15건(시정 3건, 주의 12건)
- 신분상 조치 : 0건
- 재정상 조치 : 0건

2. 지적사항 목록

(단위 : 건, 천 원)

연번	분 야	건 명	행정상 조치 (건)		재정상 조치 (천원)			기타
			시정	주의	계	회수	부과	
계		15건	3	12	-	-	-	
1	행정분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부적정		○				
2	"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소홀		○				
3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사후관리 소홀		○				
4	회계분야	업무추진비 운영관리 소홀		○				
5	"	강사수당 지급시 소득세 공제 소홀		○				
6	"	인증기 수입정산 관리 소홀		○				
7	건설분야	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검토 소홀		○				
8	"	공사 담보책임존속기간 검토 미흡		○				
9	"	공사 지연배상금 적용 부적정		○				
10	"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등 관리 소홀		○				
11	사회복지	의사 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소홀		○				
12	"	작천경로식당 운영비 사용 지도 감독 소홀		○				
13	농업분야	농지원부 정비 소홀	○					
14	"	축산분야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15	"	토양개량제 살포 지도 소홀	○					

VI 지적사항 요약

1.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부적정

- 『강진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보고) 규정에 따르면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토록 되어 있음에도 운영결과는 1회만 실시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 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소홀

- 2017년~2018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용 무상 쓰레기 봉투 배부와 관련하여 수불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수급자의 날인 또는 서명부 없이 봉투를 배부하는 등 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사후관리 소홀

-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2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철거 즉시 보조사업자가 건축물대장을 말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4. 업무추진비 운영관리 소홀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령자 등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5. 강사수당 지급시 소득세 공제 소홀

-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각종 교육 강사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법』상 일정금액(250천원)을 초과하면 소득세(주민세)를 원천 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6. 인증기 수입정산 관리 소홀

- 『강진군 수입증지조례』 제20조(계기사용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의 규정에 의하면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소재지에서 있어서는 그 다음 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7년 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총 31건에 대해 일일결산 후 최고 5일까지 지연 불입한 사실이 있음.

7. 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검토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공사계약 시 계약금액(3천만원 미만)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고,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규정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나, 하자 보증기간이 누락된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음.

8. 공사 담보책임존속기간 검토 미흡

- 『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거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여야 하나, 하자담보책임존속기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하자보수보증서 및 하자보수지급각서등을 받은 사실이 있음.

9. 공사 지연배상금 적용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제30조, 시행령 제90조, 시행규칙 제75조를 준수하여 1000분의 0.5를 적용하여야 하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약한 상기 공사에 대하여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법 개정 전 지연배상금을 적용함.

10.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등 관리 소홀

-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난(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의 발생빈도와 피해가 증가되는 상황으로 재해응급 복구용 수방자재 등은 내구연한 및 보관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불량 자재 폐기, 부족자재 확보를 위한 사용가능 여부 및 보유량 확인, 부패 예방 관리 등을 하여야 하나, 재해 응급복구용 자재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11. 의사 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지침에 의하면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에 대하여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관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반기별 확인·점검이 필요하고, 점검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의 실제 급여수령 여부,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급여통장,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점검하고 급여지출 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7년~2018년 각각 5명을 지정하였으나,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징구 및 급여관리 점검표에 의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2. 작천경로식당 운영비 사용 지도 감독 소홀

-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교부조건)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보조금 집행 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고 되어 있으나 경로식당 운영비 일부를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 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3. 농지원부 정비 소홀

-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및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관리기관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비하여 농업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지원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종료, 사망말소, 경작면적 미달 등에 대하여 미 정리하여 농지원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4. 축산분야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제76조 규정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시설물에 대해 5년간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대장을 만들어 반기별(6월, 12월)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조지원 사업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5. 토양개량제 살포 지도 소홀

- 2019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사후관리)에 의거 지역농협장의 살포계획 수립과 수혜 농업인의 해포 및 살포작업 상황을 읍·면장이 점검하고, 미 살포 농가는 농작물이 식재되기 전에 모두 살포하도록 지도 하여야 함에도 마을에 공급한 토양개량제(석회) 일부가 살포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